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학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6
----------	-------

발의년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이학래,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서종수, 송병길, 신종갑,
이필레, 유호렬, 전승학,
차재홍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참여

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마.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불필요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6. 8. 22. ~ 8. 26.(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밀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